

『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8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8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9월 11일

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정 인 기

나. 제안이유

-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 중 분임기금 운용관을 신설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현행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외에 청소행정과장을 분임기금 운용관으로 지정(안 제17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합의 되었음
- 기 타 : 조례안 붙임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용 우

□ 본 『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은,

- “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”운영관리에 있어, 현행 기금운용관(국장)과 기금출납원(계장)으로 되어 있는 회계관직을 분임기금 운용관(과장)을 신설하여,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